

[변경 대비표]

■ 변경 집합투자기구 및 변경 서류

편 드 명	BNK튼튼배당1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변 경 서 류	집합투자계약
변 경 사 유	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- Class S 보수 인하
효 력 발 생 일	2025년 02월 21일

■ 변경대비표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	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~9. (생략)</p> <p>10. Class S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</u></p> <p>11. Class S-P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	<p>①~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~9. (현행과 동일)</p> <p>10. Class S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 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</u></p> <p>11. Class S-P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 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다른 종류 수익증권 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, 판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
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오기정정	<p>① 다음 ---(생략)--- 한다. 1.~2. (생략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4.~5. (생략)</p>	<p>① 다음 ---(현행과 동일)--- 한다. 1.~2. (현행과 동일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4.~5. (현행과 동일)</p>
제25조(판매가격)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	<p>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 1.~9. (생략) 10. Class S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</u> 11. Class S-P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 ②~③ (생략)</p>	<p>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 1.~9. (현행과 동일) 10. Class S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 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</u> 11. Class S-P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 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다른 종류 수익증권 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, 판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 ②~③ (현행과 동일)</p>
제39조(보수)	Class S 보수 인하	<p>①~② (생략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 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</p>	<p>①~② (현행과 동일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 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</p>

		<p>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9. (생략)</p> <p>10. Class S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3.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5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2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15_</p>	<p>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9. (현행과 동일)</p> <p>10. Class S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3.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4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2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15_</p>
<부칙>		<신설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 부 칙 9 ></u></p> <p>(시행일) 이 투자신탁은 2025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</p>

<끝>